

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

구분	재산세(주택)		
시가표준액 (x)	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시가격 (x)		
공정시장 가액비율 (=)	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율 (=)		
과세표준 (x)	재산세(주택) 과세표준[재산세(주택)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과세표준상한액] (x)		
세율 (=)	과세표준	표준세율	세율특례
	6천만원 이하	0.1%	0.05%
	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60,000원+6천만원 초과금액의 0.15%	30,000원+6천만원 초과금액의 0.1%
	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195,000원+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.25%	120,000원+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.2%
	3억원 초과	570,000원+3억원 초과금액의 0.4%	420,000원+3억원 초과금액의 0.35%
	※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%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(=)		
산출세액 (-)	재산세(주택) 산출세액 (-)		
감면 (-)	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감면 (-)		
세부담상한 초과액 (=)	공시가격	3억원 이하	6억원 이하
	상한율	105%	110%
납부할 세액	재산세(주택) 납부할 세액		

재산세 부과 안내

과세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지방세법」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및 제141조부터 제154조까지
납세의무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산세 과세기준일(6.1.)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
납부지역 가산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액의 3%가 부과되고,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(최대 60개월까지) 그 지방세액의 0.66%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 <p>※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의 3%)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 × 0.66% × 경과월수)</p>
과세표준 상한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 연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시가표준액 등을 감안해 매년 산정되는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크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 <p>※ 과세표준상한액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+ (해당 연도 과세표준 ×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9조의2제2항에 따른 비율)</p>
세부담 상한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

구제신청 기한 안내

이의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
심판청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<p>※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</p>

구분	과세표준	세율	
도시지역분	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	0.14%	
지역자원 시설세	건축물의 「지방세법」 제109조 가액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9조 또는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9조 시가표준액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09조 따른 비율	과세표준	세율
	600만원 이하	0.04%	2,400원+600만원 초과금액의 0.05%
	600만원 초과 1,300만원 이하		5,900원+1,300만원 초과금액의 0.06%
	1,300만원 초과 2,600만원 이하		13,700원+2,600만원 초과금액의 0.08%
	2,600만원 초과 3,900만원 이하		24,100원+3,900만원 초과금액의 0.1%
	3,900만원 초과 6,400만원 이하		49,100원+6,400만원 초과금액의 0.12%
지방교육세	재산세 납부 할 세액	20%	

지방자치단체 활용란